

2024 임팩트그라운드

미래비전 계획서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는

기술이 사람을 도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가들과
여러 분야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6월 출범했습니다

임팩트그라운드는

사회혁신조직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사회문제를 풀어내고,
스케일업/스케일아웃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실험과 아이디어를 시도해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본 자료는 2024 임팩트그라운드의 지원을 받는 사회혁신조직의 미래비전계획서입니다.
사회공익을 위해, 본 자료를 공유하며, 영리목적의 사용이나 자료의 편집은 불가합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미래비전 계획서

■ 제1장 조직소개

● 조직개요

대표자 및 이사회 명단			
- 이사장: 김이수 - 이사: 김영준, 김현수, 김유니스, 데이빗워터스, 문영화, 박영아, 변연식, 신경숙, 윤재윤, 장서연, 준리, 한상희 감사: 변영선, 오종석			
설립년월일	2004년 1월 1일	상근직원 수	12명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창덕궁길 29-6, 3층 (원서동, 북촌창우극장)		
법인유형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비영리 민간단체 ☐ 비영리 임의단체 ☐ 공공기관 ☐ 사회복지법인 ☐ 기타 ()		
홈페이지	www.kpil.org	모 법인명	모 법인이 있는 경우, 기재
공익법인	Y	주무관청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의 설립목적			
국내 최초 비영리로 운영되는 공익변호사들의 모임인 공감은, 2004년 아름다운재단의 공익변호사 기금을 재정기반으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2012년 9월 13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으로 독립하였다. 공감은 공익소송지원과 법제정운동, 제도개선활동을 통해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구체적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환경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을 제기하여 이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사회 인권의 경계를 확장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법적 실천이 공감의 활동으로 머무르지 않고 '공익법 활동'으로 확산되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더 광범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익법 활동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조직의 수익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 설립 후, 누적기부금 총액 (~2023) : 총 10,317원

****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4,223	905	1,088	1,055	931	890	1,225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아름다운재단 소속으로 기부금액을 정확히 나누기 어려움, 독립한 2013년부터 기재함

- 최근 3년간 수익비용 내역 :

	2021년(연말)	2022년(연말)	2023년(연말)
수익 총계	948	921	1,289
재단 지원금 총액			400
비용 총계	878	908	995

● 주요 사업(3개 이내)

사업명	사업 내용 (한 문장으로 기술)
인권침해(차별) 사건 지원	공익소송 지원 신청을 통한 소수자, 사회적 약자 인권침해 구제 소송
법 제정 운동 및 제도개선	난민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등 소수자 권리를 위한 입법운동
공익변호사자립지원 사업	다양한 인권영역과 지역에서 공익변호사가 활동할 수 있도록, 공익인권 단체에 상근 변호사 인건비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

● 키워드 / 조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를 3개 작성해 주세요.

Ex. #환경 #IT #기술 #사회복지 #알권리 #성소수자 #인권 #장애인...

#소수자인권 #법제도개선 #1호공익변호사단체

■ 제2장 문제정의와 문제해결 프레임워크

● [문제정의]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필요성과 중요성을 중심으로 기술 (왜 문제이고 누가 이 문제에 대해 영향을 받는지 설명)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인권 문제, 법을 통한 사회변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공감은 공익변호사 단체입니다.
본연의 인권운동법률가 단체이며,
가장 낮은 곳의 서민들과 함께 끌어안고 뒹굴며
슬픔을 나누는 가슴 따뜻한 법률가 단체입니다.
경찰이나 검찰, 법원에 가기 전에는 법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추후도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실망하고 절규할 때,
현장에서 목소리와 힘을 보태는 활동가 단체이기도 합니다.”
- 전수안 전 대법관, 공감 전 이사장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하고 법 앞에 평등하다는 당연한 명제는, 법 현실에서는 누구에게나 적용되지 않는다. 공감은 한국사회에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고, 차별적 대우를 받아온 다양한 소수자 집단과 사회적 약자에 주목하여, 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적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에게 법은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다. 법은 이들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이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도가 될 수도 있다.

1)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현실적 제약으로 법이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적 자원의 부족과 소송 등 법적 절차에 대한 낮은 접근성으로 인하여,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공감은 노동자와 기업, 일반 시민과 정부와 같이 불평등한 권력관계 속에서 법적 권리를 침해 당하는 당사자들을 대변하여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소송 등 사건지원을 하고 있다.

2) 법이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도가 되는 경우

장애인, 성소수자 등 그 동안 가시화되지 못한 개인과 집단의 권리는 비장애인, 이성애 중심의 사회 구조 속에서 법의 테두리로 보호받지 못했다. 공감은 **법과 제도의 경계를 확장하고 재구성하여 이들이 온전하고 평등하게 법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한편, 법은 국가에게 기본권 보장의 의무를 지우는 규범이 되기도 하지만,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에 게 통제와 억압의 장치**가 되기도 한다. 국민국가에서 시민권을 중심으로 한 법 제도는 비시민권자인 이주민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대우하지 않고,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는 인적 자원으로 취급한다. 공감은 이러한 **차별적인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공익소송, 입법운동, 연구조사 등을 하고 있다.

3) 1),2)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법 활동의 부족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문제는 다양하고 광범위한데 비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법 활동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코로나19 상황과 기후위기 같은 재난의 문제는, 특히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에게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더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을 교차하는 지원체계와 공동대응이 부족한 상황이다. 공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익법 활동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활동을 하며, 복잡한 사회변화로 인하여 여러 영역에 걸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공감은 현재 **여성, 장애, 노동, 빈곤과 복지, 이주와 난민, 성소수자**의 인권을 다루는 **6개의 팀과 국제인권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익소송지원과 법제도 개선 활동을 기반으로, 법과 제도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증진하여, 누구나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고, 기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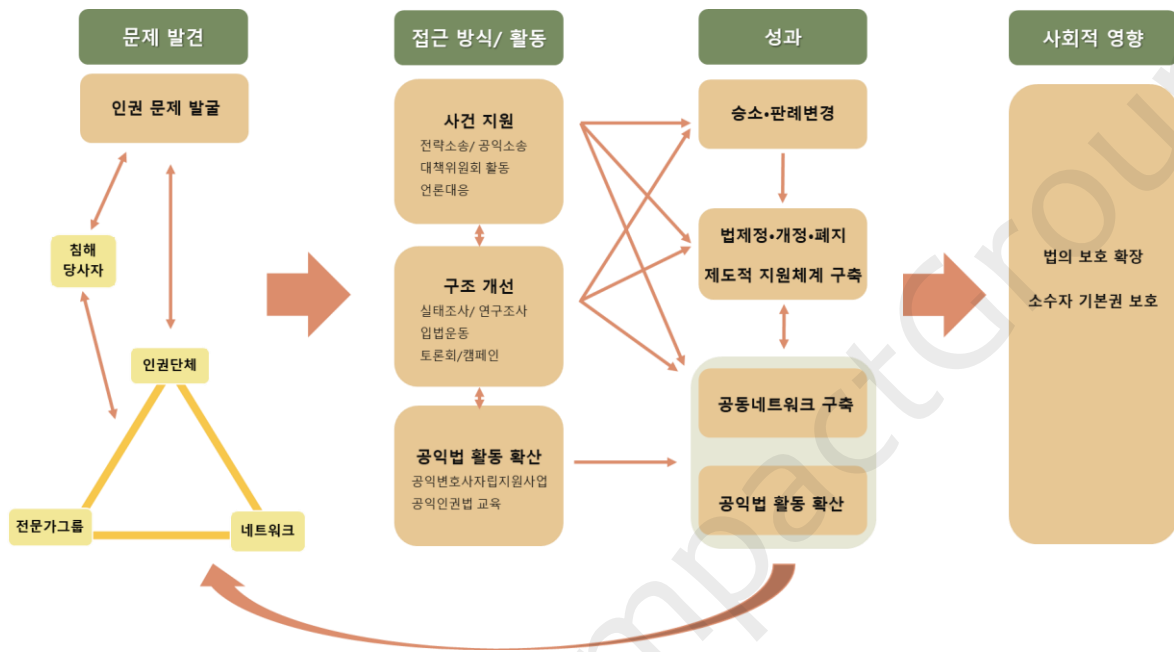
● [프레임워크] 우리 조직이 사용하는 프레임워크(문제해결 모델)

프레임워크 소개 : 타겟 및 접근 방법 등

공감은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인권문제를 발견하고, 개별적 사건지원을 통해 이들의 구체적 인권을 보장한다. 또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와 사회적 구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 인권의 경계를 확장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적 실천이 '공익법 활동'으로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되어 '법'을 인권보장과 사회변화를 위한 열린 도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

공감의 활동은 "인권문제의 발견 → 사건지원 및 구조/제도개선 → 공익법 활동의 확산" 이라는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누구나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고, 기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로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다.

문제 해결 프레임워크



1) 문제발견

인권문제의 발굴은 그 자체가 공감 활동의 중요한 접근방식 중 하나이다. 인권 침해 당사자가 공감에 직접 사건 지원을 신청하거나, 인권침해 현장에 가까이 있는 각 영역의 인권단체들, 해당 분야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네트워크, 연구자 등 전문가 집단과 협력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한 개별 사례나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법 제도의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2) 사건지원 및 구조개선

한국 사회에서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사회문제나 인권문제가 '**개별사건**'으로 드러난 경우, 공감은 법적 자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제기**, **공익소송/전력소송** 등을 통해 인권침해를 입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직접 제공한다**. 때로는 공감의 구성원과 외부의 공익변호사들과 함께 공동대리인단을 구성하여 법적 조력을 제공하며 이 과정에서 활동가, 연구자 등이 결합하여 **대책위원회 등의 장·단기적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협력**하기도 한다. 인권침해 사건과 그 문제점을 언론을 통해 알리고, 반복적인 인권침해, 차별적 관행, 공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개인의 피해를 구제하고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

개별사건지원과 동시에, 혹은 개별사건과 무관하게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불합리한 '**기존의 사회구조와 법제도**'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경우, 개인의 인권침해 구제를 넘어 해당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불합리한 **법, 제도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 해당 인권침해의 피해 당사자와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 실태조사**를 하고, 근거가 되는 법제도와 참고할 만한 **해외의 비교**

법 연구 등 연구조사를 수행하기도 한다.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관련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캠페인도 하고 있다.

‘개별사건 지원’과 ‘제도개선’의 각 목표에 대한 접근방식은 다양하지만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을 하며 결과적으로 ‘해당 문제의 해결’ 및 ‘지원체계의 구축’이라는 사회 변화를 만들고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인용되거나 법원 절차에서 승소하여 해당 사건이 선례가 되면, 국가기관이나 개인이 그와 같은 인권침해를 반복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 규범이 된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이나 위헌소송이 인용이 되면, 해당 법률 조항을 폐지하거나 개정하여 향후 유사한 침해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개별사건이 공론화됨으로써 유사한 사건들이 발굴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해당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법제도 개정에 나아가는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공감은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개별사건의 해결과 함께, 그러한 인권침해를 발생시킨 관련 사회적 구조 및 법제도의 개선까지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공익법 활동의 확산

공감은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제도개선을 위하여 공감이 직접 수행하는 공익소송이나 제도개선, 연구조사 등에 머무르지 않고, **기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식으로 공익법 활동의 확산**을 상정하고 있다. 공감에서 활동하는 구성원의 수는 한계가 있기에, 한국 사회 곳곳에 있는 법률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더 많은 **공익적 법률가를 양성**하고 기존 **법률가들의 공익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공감은 초기부터 공익법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 왔다.



- ① **공익인권법 교육**: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외에도 소외되는 사람 없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인식개선이 중요하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인권 현실을 알고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공익인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예비법조인 대상 교육**의 경우, 정규 법률교육과정에서 공익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2회 실무수습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로스쿨 학기 중 정규 강의 및 특별 강의를 통해 공익활동을 알리고 있다. **일반인(비법조인)대상 교육**의 경우, 전국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법캠프, 공감의 후원회원 및 인권의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감포럼, 전국의 중고등학생이 참가할 수 있는 청소년 인권강좌, 5개월간 공감의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대학생 자원활동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② **변호사 공익활동 활성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할 책무가 있다. 공감은 최초의 공익변호사 단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더 많은 변호사들이 공익활동에 동참하게 하는 지원사업을 진행해 왔다. 도움이 필요한 공익인권단체와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변호사나 공익활동을 하고자 하는 법무법인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하였고,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법자문사들의 프로보노(무료법률지원) 활동을 중개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공감은 공익변호사 자립지원 신청을 받아 공익단체에서 일하고자 하는 지원자를 선정하고 공익단체에 이들에 대한 인건비(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선발된 공익전담변호사들은 2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받아 이주, 난민, 정보인권, 노동, 성소수자, 환경 등 인권단체에서 상근하여 활발한 공익변호활동을 벌이고 있다.

기존 프레임워크와의 차별점(혁신점)

1. 한국 최초의 비영리 공익변호사 단체

공감은 2004년에 한국에서 최초로 비영리로 공익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변호사단체로 만들어졌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기존의 접근방식은 문제제기 차원에 그쳐서 실질적인 구제나 보상 등을 끌어내는데 한계가 있거나, 개별적인 구제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공감은 중, 장기적으로 인권문제에 천착하고 전념할 수 있는 비영리 공익변호사 단체로서, 기존 인권단체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인권침해 사건 등에서 법적 문제를 발굴하고, 공익소송 및 법제도 개선 활동 등을 통해 인권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접근방식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해결 방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한국의 공익법 활동 확산에 최초의 공익변호사 단체로서 기여하였으며, 이후 공익변호사 단체의 확산을 위하여 다른 공익변호사 단체를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2. 사건지원 및 제도개선

1) “현장에서 출발하여 경계를 넘어 변화로, 그리고 다시 현장으로” – 인권단체 파견, 네트워크, 실태조사, 연구조사 등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정보가 아니라 누군가의 소리이며,
소리는 앉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소리 나는 곳으로 달려가야 한다”
-신영복

“현장에서 상근하는 만큼, 문제에 대한 이해와 깊이와 속도가 빠르며,
활동가와 법률가라는 생각의 벽이 없고,
‘법률활동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었다”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감의 단체 파견 사업에 대한 평가)

공감은 삶의 현장에 있다. 현장은 ‘일이 생긴 그 자리’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사무실에서 사건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고 서면을 쓰고, 법원에서 공방을 하고 판결을 기다리는 등 법률 조력의 모든 과정에서 현장과는 가까울 수 없는 직역이다. 하지만 공감은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인권옹호와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인권단체에 변호사를 파견하여 현장에서 법률지원 활동을 하는 ‘**파견 사업**’의 형태로, 그리고 누구보다 현장과 가까워서 활동하는 활동가, 연구자들과의 ‘**네트워크**’의 형태로 사건의 시작, 진행, 그 마무리와 후속작업까지 현장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법률가 단체이다.

초기 공감의 변호사들은, 재정적 문제 등 여러 제약조건으로 상근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는 공익단체에 변호사를 6개월간 파견하여 단체 운영상 부딪히는 소소한 법률문제에서 기존의 제도를 바꿔내는 법률 개정까지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파견사업을 진행하였다. 파견된 공익단체에서 단체운영과 행정에 관련된 법률자문과 사업관련 법률활동(법률 제정 개정, 소송, 제도와 정책 연구 등) 및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실무자 법률교육 및 법률매뉴얼 작업을 실시하였다. **총 62개의 인권단체에 대하여 변호사 파견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현재는 다양한 영역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수시로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공감은 성산업으로의 이주여성 유입 실태조사,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등 ‘**실태조사·연구조사 현장**’을 누비며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각 분야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인지, 개선되어야 하는 제도가 무엇인지 인권 현장에서 답을 찾고 있다.

공감은 영역별 또는 사업별로 **국내외 다양한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세계한인변호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같은 변호사단체 외에도 시민사회, 인권단체들과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사건 발굴, 소송 진행, 법제 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진행한다. 또한 정책협약과 교육이라는 틀을 통해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엠네스티, 유엔난민기구 등 정부기구 혹은 국제기구와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난민권리네트워크 등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구성하고 직접 참여해 국내외 현안에 공동대응 하고 있다. 공감의 영역별 주요 네트워크는 아래와 같다.



2) 사건지원과 제도개선 동시 진행

공감은 “소수자 인권보장 및 인권의 경계 확장”, 그리고 “변화를 지향하는 법적 실천”을 지향한다. 공감의 **사건지원활동**과 **정책개선활동**은 단순히 기계적인 조합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동시에 상호작용하면서 진행된다.

정신병원 강제입원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선례를 만들고, 헌법소송을 통하여 정신장애인 강제입원제도 자체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내어, 정신건강 복지법 개정활동을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성전환자 성별정정 사건지원은 해당 사건 성전환자 개인을 위한 법률지원인 동시에 법적 성별정정에서 성전환 수술을 요구하는 위헌적인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이자 선례를 만드는 공익법 활동이다.



3. 공익법 활동 확산

공감의 활동만으로는 여러 영역의 다양한 인권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공감은 각 분야별 인권단체들, 법조계 공익활동에 관심을 갖는 조직들과 폭넓게 협력해 왔다. 사회변화를 만드는 일은 혼자서 할 수 없고, 저변을 넓혀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한국 최초의 공익변호사 단체로서 공익변호사 양성과 지원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효과적인 변호사 공익활동을 위하여 변호사 공익활동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실질적인 수요를 조사하고 공익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변호사들을 파악하여 참여모델을 개발했다. 변호사 공익활동에 관한 외국의 운용사례를 연구하여 국내 공익법 활동에 적용하고, 공익활동의 범위 확대를 위해 자원활동가제도, 로스쿨 인턴쉽과 펠로우쉽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공익변호사자립지원사업’의 경우, 공감은 ‘법조공익모임 나우’와 함께 일정기간 인건비를 전액 혹은 일부 지원함으로써 전업으로 공익변호사 활동을 하려는 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공익단체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힘써 왔다. 지원을 받는 변호사는 해당 공익단체에 상근하면서 공감 객원연구원으로 소송이나 프로젝트 진행이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감의 해당영역 담당변호사가 수시로 자문·멘토링을 제공한다. 공익변호사자립지원사업은 인건비 직접 지원이라는 점, 최초의 공익변호사단체로서 공감의 경험과 물적, 인적자원을 정기적으로 나누어 또 다른 지역과 또 다른 영역에 공익변호사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변호사의 다양한 공익활동 및 자립지원의 생태계를 풍부하게 만들어 가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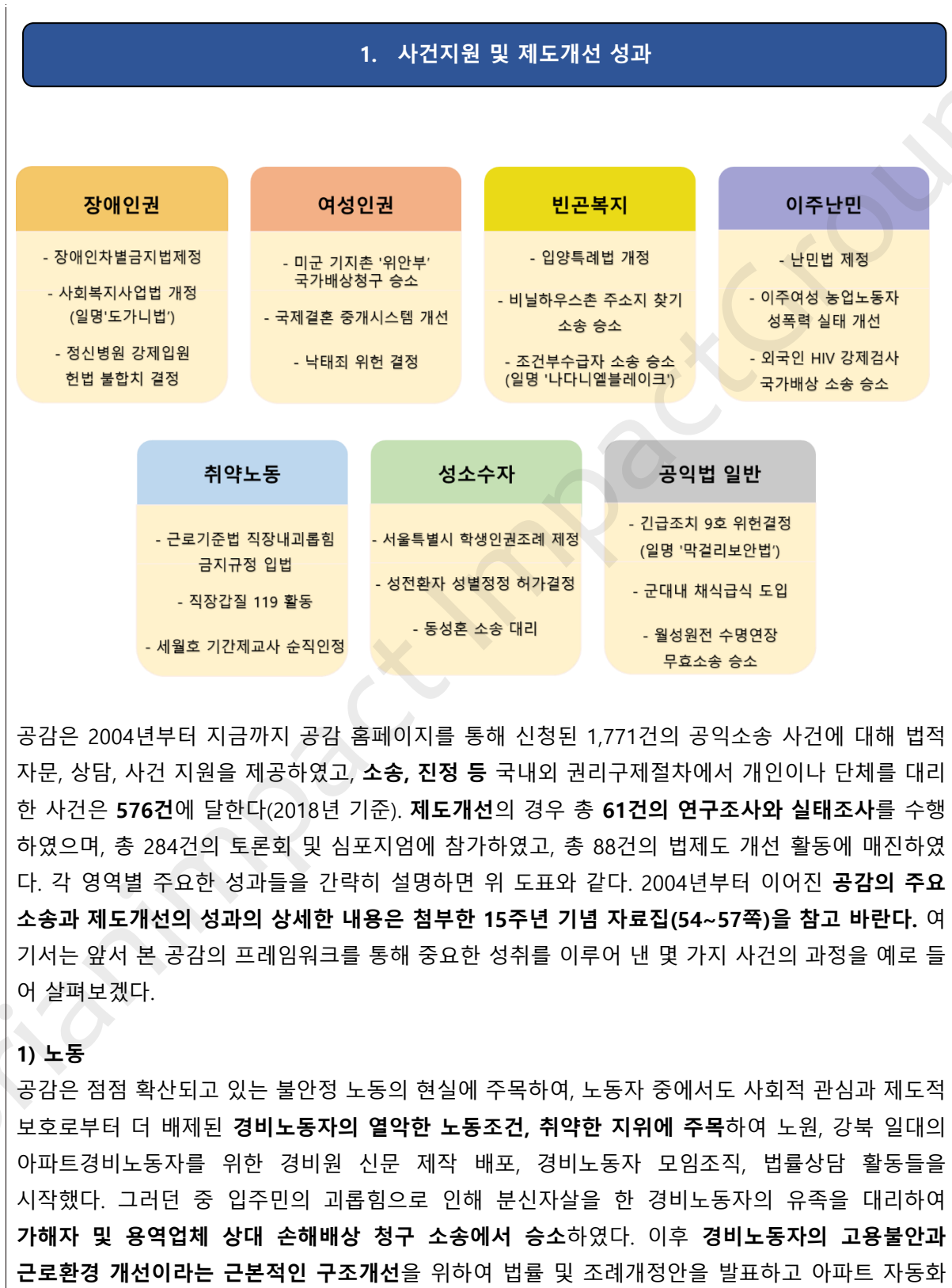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이 이런 다양한 방식들을 실험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주민센터 친구’ 이제호 변호사

●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성공의 경험

본 조직의 문제해결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성공한 경험에 대해 기술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경비원 집단 해고 소송을 대리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상 입주민의 괴롭힘 금지 조항 신설에도 기여하였다.

2014년 공감이 아파트경비노동자 지원 활동을 시작한 때만 해도 관련한 활동을 하는 법률가, 단체, 노조가 전무하였으나 현재는 서울에서만 1000명의 아파트경비노동자가 조직된 상황이고 **비정규센터를 비롯하여 여러 단체를 통해 법률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감은 지금도 '아파트 노동자 조직화 공동사업단의 정책단'을 통해 아파트경비노동자에 대한 법률 자문을 실시하고 정책을 내는 등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 난민



공감은 2005년 한국에 난민관련 판결이 거의 없던 시기부터 **난민지위 인정을 위한 개별사건을 지원**해 왔다. 난민을 지원하는 변호사, 활동가 단체들의 연합인 **난민인권네트워크**의 초기 구성원으로 네트워크의 난민 인식 개선 캠페인, **난민법 제정**, 난민사건 공동 대리, 외국인보호소 문제 등에 함께 해왔으며, 난민법이 제정되어 법무부 자체 난민심사체계가 갖추어진 지금은 난민법 개정 및 심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문제를 발굴하고 공동대응을 하면서도 동시에 성소수자 난민, 감염인 난민, 무국적자 등과 같이 **난민 중에서도 취약한 소수자를 지원**하고 있다.

3) 장애

장애인들은 고용, 교육, 이동, 재화와 용역 서비스의 접근성, 사법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장애를 이유로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당하고 있다. 공감은 초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현장파견** 활동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 법률상담, 인권위 진정 및 소송 대리 등의 법률지원을 제공하며 동시에 법 제정을 통한 **제도개선**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률안 공청회 참여, 법률안 수정 작업, 법안 당사자 교육 및 국회의원 설득 작업 등을 병행하였다. 공감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의 노력으로 인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공감은 장애인 차별 상담,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점검 토론회 등 후속작업에도 함께 하고 있다. 관련 법이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학대 및 착취**가 성행하였으므로, 공감은 각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법률지원 외에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립을 위한 제도개선 활동 등을 지속하였고, 2017년 보건복지부 산하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2. 공익법 활동의 확산

공감은 최초 공익변호사 단체라는 책임감으로 더 많은 변호사들이 공익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변호사 및 법학도 대상 **공익 변호사 라운드** 양성을 위한 테이블, 2011년 이후 총 26차 **1300여명** 참여
- 공익법조모임 나우와 함께 **공익변호사 자립지원**, 2014년 이후 총 **22명** 지원
- **법무법인 내 공익 활동 전담 조직** 증가 및 법조 전반에 공익법에 대한 관심 증가
- 법학전문대학원 실무 수습, 총 **307명** 참가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지원단체**

번호	단체명	협약기간	영역	지역
1	감사와 동행	2014.4~2016.3	이주민	서울
2	진보네트워크센터	2014.4~2016.3	정보인권	서울
3	진보네트워크센터	2015.4~2016.3	정보인권	서울
4	부산기독교청년회유지	2015.5~2017.4	소송구조	부산
5	광주 공익변호사와 함께 하는 동행	2015.5~2017.4	공익일반	광주
6	공익법률기금	2016.6~2018.5	공익변호사지원기금	서울
7	반월시화공단 월담	2016.10~2018.9	노동	안산
8	공익법률기금	2017.5~2019.4	공익변호사지원기금	서울
9	녹색법률센터	2017.5~2019.4	환경	서울
10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땃동	2017.5~2019.4	성소수자	서울
11	청주노동인권센터	2018.5~2020.4	노동	청주
12	청주노동인권센터	2018.5~2020.4	노동	청주
13	아시아의창	2018.5~2020.4	이주민	군포
14	이주민센터친구	2019.5~2021.4	이주민	서울
15	감사와 동행	2019.5~2021.4	이주민	서울
16	지구인의 정류장	2019.5~2021.4	이주민	안산
17	광주 공익변호사와 함께 하는 동행	2020.5~2022.4	공익일반	광주
18	장애인차별추진연대	2020.5~2022.4	장애	서울
19	장애인법연구회	2021.5~2023.4	장애	서울
20	이주민센터친구	2022.5~2024.4	이주민	서울
21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22.5~2024.4	장애	안산
22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2023.05~2025.05	여성	서울

공감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권현실을 알리고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익 인권법 교육을 진행하였다.



- 예비 법조인 및 일반시민 대상 **인권법캠프** 개최, 2008년 이후 총 27차 **1,650명** 참여
-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청소년 대상 **청소년 인권 강좌**, 2011년 이후 총 16차 **400명** 참여
- 상, 하반기 5개월 동안 공감의 활동을 직접 경험하고 지원하는 **자원활동가** 제도, 2005년 이후 총 38차 **750여 명** 참여

이 외에도 공감은 법률지원이 필요한 공익인권단체와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해 왔다. 이러한 공감의 공익활동 중개의 역할은, 2016년 서울 지방변호사회 산하 프로보노지원센터가 개소되어 분화되면서,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가 센터장을 맡아 더욱 강화되고 체계화되었다. 공감 이후 공익법 활동을 펼치는 전업 공익변호사와 단체의 수가 증가하여 공익변호사가 100명이 넘을 만큼 공익변호사의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확장하는데 기여하였다.

***주요 수상내용(국내외 주요상의 수상 경력을 기재)**

연도	포 상 내 용	포 상 처
2019	제7회 변호사공익대상(황필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2015	제19회 정일형·이태영 자유민주상 수상	정일형·이태영박사기념사업회
2014	아산 사회복지재단 '아산상-재능나눔부문' 수상	아산사회복지재단
2013	제1회 변호사공익대상(염형국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2013	제8회 입양의 날 국무총리 표창(소라미 변호사)	국무총리
2011	법조언론인 수여 '올해의 법조인상' 수상	법조언론인클럽
2010	'청년 일가상' 수상	일가재단
2008	제2회 사회봉사단체 우수단체 선정	법조협회
2007	필리핀 카톨릭 추기경 수여 감사패 수상	필리핀 가톨릭회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수여 감사패 수상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2006	한국장애인인권상 수상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
	제20회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상 수상	K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제3장 미래비전

●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어떤 요소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공감은 문제해결 프레임워크와 혁신점을 기반으로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라는 사회적 영향력 극대화하기 위하여, 공익소송 및 제도개선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문제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하여 현장의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 전반의 공익법 활동의 확산을 통하여 더 광범위한 영역과 지역에서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공익법 활동을 촉진하고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1. 공익소송 및 제도개선 전문성 강화

1) 공익소송의 기획력 및 전문성 강화

공익인권 소송은 사인 간의 일반 민, 형사 소송과 달리, 공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소송의 방식으로 사회의 변화를 도모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법을 동원한 공익인권 옹호활동 중에서도 소송을 통한 사회변화는 법해석의 변화와 사례를 만들어 사회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변호사집단이 할 수 있는 특유한 사회변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는 법적인 권리로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국민 여론과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하는 입법의 영역에서 문제 해결이 요원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예를 들면, 동성혼 제도화의 경우), **소수자 인권 보호의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사법부를 통한 사회변화를 꾀하는 전략**으로 채택되고 있다.

공익인권 소송의 경우는, 소송의 상대방이 **정부(국가배상 소송이나 행정 소송, 헌법 소송)**나 **기업(노동사건)**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을 소송에서 상대할 때 **인력부족, 자원 불균형, 정보 및 증거 편재의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나 기업은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거나, 정부나 기업 측에 유리한 학자나 연구 자료를 쉽게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반면에,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분야는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감은 여러 전략과 방법들을 사용하여 왔다. 미국변호사 등외국 법자문사나 전업연구자, 활동가와 같은 **전문 인력을 객원 연구원(펠로우쉽) 제도로 모집**하여 특정 기간 동안 함께 일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도 하였고, 인권법학회나 헌법학회 등 **외부학회와 협업**이나 기획으로 학술대회를 통하여 내용을 생산하거나, 외부 학자들에게 자문과 소송에 제출할 의견서를 요청하기도 한다.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기관에서 관련 인권의제를 연구용역**으로 발주하는 경우에 연구를 직접 수행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분야는 여전히 연구가 척박한 상황이며, 특히 **새로 발굴되는 인권 이슈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예를 들면, 노동사건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노동조합 설립사건 등)

공감은 공익인권 소송이 필요한 영역에서, 인력을 충원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 전문인력에 대한 투자와 가용 가능한 외부 연구 자원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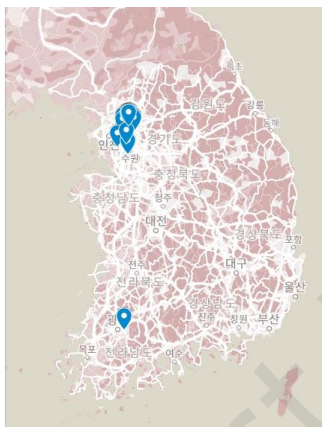
2) 효과적인 입법운동의 체계화

공익입법운동은 입법절차를 통한 법제도 변화를 꾀하는 전략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정책 수립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행정입법의 형태를 빌어 국회의 입법 기능을 상당 부분 대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권력 분립 및 상호 견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의 관점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불리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는 공익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다양한 입법 주체들의 참여가 요구된다. **공감은 그 동안의 입법 운동 및 제도개선의 경험과 역량 강화에 더 투자하여, 국회 및 정부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체계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2. 공익법 확산: 공익변호사 단체의 수도권 편중

전국 공익변호사 분포
개발스타일

- 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의 활동
- 중앙장애인인권운동기관
- 화우공익재단
- 재단법인 동천
- 장애인권법센터
- 감사회동행
- 이주민센터 진구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경기도 장애인인권운동기관
-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 공익법센터 어뜰
- 공감
- 공익사단법인 경
- 국제아동인권센터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법무법인어는
- 사단법인 두루
- 온콜
- 아시아의장
- 나눔과 이름



공감을 포함하여 현재 공익변호사 단체들은 서울에 편중되어 있다. 하지만 대구 이슬람 사원 반대시위, 제주 예멘 난민 사건 등 수도권 외 지역에도 다양한 인권 문제가 있고, 특히 이주노동자 문제와 같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권 침해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변호사 단체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서 **긴밀하게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수도권 외 지역의 공익변호사 단체가 유지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재정적인 부분**을 독립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 실무경험이 부족한 변호사가 의존할 수 있는 변호사 네트워크가 부족한 점들을 수 있다.

공감은 공익변호사자립지원 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공익변호사 단체 및 공익변호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더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공감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지역사무소 개소를 준비할 계획이다.

3. 영역 간 단절로 인한 공동문제에 대한 미흡한 대응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여러 영역이 공동의 문제로 의제를 설정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최초의 사망자는 정신병원에 20년간 강제입원 되었던 고령의 정신장애인이었으며, 노숙인 급식소와 보호시설의 폐쇄로 사회복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었던 홈리스 문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미등록 이주민들의 외국인보호소의 과밀수용과 장기간 수용 문제, 무급휴업으로 인한 노동자의 노동환경 악화 문제 등이 발생했다. 이처럼 반복적인 감염병 확산이 예견되는 시대, 그리고 기후위기의 시대에서 이로 인한 불평등의 문제는 여러 인권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치지만, 각 영역의

활동이 해당 영역의 현안에 대응하는데 집중한 나머지 아직까지 공동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거리에서 폐지를 수집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여성 노인의 빈곤 문제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자원재생의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는 문제로 해석하면, 이는 노인의 빈곤 문제이자, 복지, 노동, 여성 인권이 교차하는 문제가 된다.

공감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여러 영역에 걸쳐 있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해석의 의제설정과 해결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 지원사업의 성과 정의

임팩트 그라운드 지원의 지원을 통해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된다면, 어떠한 변화를 ‘성공’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1. 사건지원 및 제도개선

1) 인력 충원으로 공익소송/기획소송 및 네트워크 활동 강화

공감은 공익소송/기획소송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적 영향력이 큰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각 영역의 인력을 충원하여 기획소송에 전담 배치하고 네트워크 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예를 들면 **노동분야**의 경우, 기업과 정부 측을 대리하는 사건을 맡는 법무법인이나 법무법인에서 설립한 공익변호사 단체의 경우에는 이해충돌 문제로 노동자 측을 대리하는 사건을 맡지 못하는 반면 비영리로 노동사건을 지원하는 변호사의 수는 극히 드문 상황에서 공감의 노동팀 2인의 변호사가 진행할 수 있는 사건 수에 한계가 있다. 비정규직, 간접고용, 특수고용이라는 형태로 불안정 노동이 증가하고 있고,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불안정 노동에 처해 있는

현실에서 노동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노동조합 결성이나 단체교섭 등의 자체적 힘도 약한 노동자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공감은 장기적으로 **노동팀 변호사와 연구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노동 영역에서 소송과 연구조사, 제도개선의 역량을 강화하여 **중요한 선례가 되는 판결례를 다수 이끌어낼 계획**이다.

2) 정책, 입법, 연구 등 전문성 있는 인력 충원

- 객원 연구원 제도 확대 시행
- 기본적인 자료의 구축을 통한 정보 플랫폼 구축

공감은 공익변호사 단체로서 단순히 소송을 위한 활동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적 법제도 연구 및 기본적인 자료의 생산, 구축이 필요하다. **전문인력 충원을 통하여 연구 자원과 역량을 강화하고, 기본적인 자료의 구축을 통한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객원 연구원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공감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가용할 수 있는 외부 학자 및 연구자들과의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한국의 공익법률지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 제도개선의 경우, 정책, 입법, 연구 등 전문성이 있는 인력 충원을 통하여 효과적인 입법 운동을 체계화하여 전개하고자 한다.

3) 인권문제의 적극적 발굴 및 법률지원 접근성 강화

- 현장 법률지원의 거점 공간 및 온라인 플랫폼 마련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들은 일반적으로 차별적 대우에 쉽게 노출되고,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간이나 온라인 플랫폼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현장 가까운 곳에 거점 공간을 마련하거나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최근 공감은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활동가들과 함께 이태원 등지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트랜스젠더 여성들을 만나는 아웃리치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트랜스젠더 여성들이 성매매에 종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남녀로 성별이분화 된 사회 구조 속에서 교육이 중단되거나 성별정정의 경직성 때문에 채용 차별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반면 성매매 현장의 트랜스젠더 여성들은 성폭력에 쉽게 노출되지만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 공감은 이처럼 사회 안 전망이 전혀 없는 트랜스젠더 여성들이 쉽게 접근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태원 등지에 거점 공간을 마련하여, 정기적인 법률상담과 지원을 통하여 이들의 권리를 증진하고자 한다.

2. 공익법 활동의 지역 확산

1)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기간 및 대상 확대 시행

현재 공감은 ‘법조공익모임 나우’와 함께 1년에 2~3개 단체에 상근변호사의 인건비를 2년 동안 지원하고 있다.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으로 인큐베이팅에 성공한 대표적 단체로 ‘청소년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땃둥’의 상근변호사를 들 수 있다. ‘땃둥’의 경우는 사업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단체의 상근변호사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상근변호사가 필요하지만 재정적 기반이 약한 단체들의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종료하면 상근변호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공감은 공익변호사 자립지원 사업의 지원 기간을, 현재 2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공익변호사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공익변호사의 자립을 강화하고 더욱 확산하고자 한다.

2) 지역단체 변호사 파견 및 지역사무소 개소

공감은 장기적으로, 공감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공익변호사단체나 공익변호사가 없는 지역에 공감의 지역사무소를 개소하여, 농축산업, 원양어선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의 경우처럼 수도권 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신속하고 긴밀하게 대응하고, 해당 지역의 사건 지원 및 제도개선 활동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3. 다양한 영역을 교차하는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1) 재난 피해자에 대한 인권옹호 지원체계 구축

재난과 같은 범분야적 상황의 경우 기존의 사회불평등과 부정의가 더욱 강화되고 증폭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재난과 인권팀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심도 깊고 체계적인 연구조사를 통해 그동안 세월호 참사, 가슴기살균제 참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등 다양한 재난참사 상황에서 수행해 온 피해자 권리 옹호활동,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법제 및 인식 개선 활동 등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지속가능한 형태로 가져 나가는 한편, 재난참사 상황에서의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즉각적인 현장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면 향후 재난상황에서의 소수자 인권보장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2) 국제인권센터 온라인 플랫폼 구성과 공동활동 시스템 구축

사람도 물건도 기술도 국경을 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지금, 오로지 국내적 요소만을 가지고 있거나 국내적 대응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안은 오히려 찾아보기 어렵다. 공감 내에는 국경을 넘는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국내외 법제도와 사법, 비사법적 구제기구를 통한 공동대응을 전문으로 하는 국제인권센터(Trans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e)가 2019년 개소하여 '이주' '난민' '기업과 인권' 영역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국제인권센터가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특히 국제인권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성하여 1) 약 20년간 축적해온 국제적인 공익인권 법률가 단체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실질적인 공동활동 시스템을 구축하고, 2) 학문적, 실무적으로 축적된 국제인권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인권법의 주류화를 꾀하고, 3) 이주, 난민, 기업과 인권 등 초국경 문제와 관련하여 기존 국내 및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의 틀을 강화할 수 있다면 국경을 넘는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장애영역의 경우에도 **유엔장애인차별철폐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한 장애계의 상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적인 활동을 위한 안정적인 기금마련을 통해 국제회의 참석 및 개최, 기획소송 제기, 입법개정촉구, 개인진정을 통한 권리구제 활성화 방안 마련 등과 같은 국제적인 활동을 활발히 한다면 국내 장애인권 네트워크와 국제 장애인권 네트워크의 연대를 활성화할 것이며, 국내법적 시각에 머물러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차별구제청구소송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활성화하여 장애인권정책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스케일업 또는 스케일아웃에 대한 계획

Scale-Up 이란? 조직의 규모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

Scale-Out 이란? 조직을 분화/모델링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수평적 방법

Scale-Up

공감은 대표적인 공익변호사 단체로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안정적 조직 관리와 운영이 사회적 영향력을 이끌어내는데 매우 중요하다.

공감은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활동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몰입하여 왔고, 이에 관한 상당한 역량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임팩트 그라운드 지원사업을 통하여 **현재 집중하고 있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활동해온 영역의 인력을 보강하고 역량을 더 투여하여 그 활동의 성과를 앞당길 것이다.** 그 과정에서 강화된 공익소송과 제도개선의 전문성을 축적하고 확산하여,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공익법 활동의 역량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동안 공감이 축적해 온 성과들이 공감만의 성과로 남은 것이 아니라,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운동과 제도개선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었듯이, 공감은 임팩트 그라운드 지원사업을 통하여 조직 규모와 역량을 강화하여, 우리 사회가 공익법 활동을 통하여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활동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Scale-Out

공감은 공익변호사자립지원 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공익변호사 단체 및 공익변호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더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공감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지역사무소** 개소를 준비할 계획이다.

그 동안 **공익변호사자립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수도권 외 지역의 단체는 부산기독교청년회 유지재단, 광주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2회) 등이 있다. 지역의 공익변호사는 현재의 지원기간을 2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적 자립의 기반을 강화하고, 공감의 프레임워크에 기반하여 지역에서의 의제 발굴과 공익 소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수시 자문과 협업을 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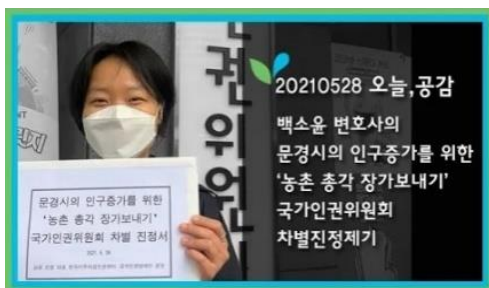
● 디지털 기술의 활용

스케일업 또는 스케일아웃의 과정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기술

1. 리걸디자인(Legal Design)

-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 당사자들이 법률정보를 이해하기 쉽도록, 인포그래픽,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시각화), 상호작용을 고려한 리걸디자인과 온라인 채널 활용
- 공익소송 변론과정에서 효과적인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리걸디자인과 협업

2. 법률지원 접근성 강화 및 공익법 활동의 확산



-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채널 구축(수도권 외 지역 공익변호사와의 네트워킹 강화)
- 인권 의제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과의 협업을 통하여 공감의 콘텐츠 생산과 유포의 효율성 제고
- 기본적인 자료 구축 및 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